2017년도 (사)해양환경안전학회 추계학술발표회

국제해양법상 항만국의 역할에 관한 고찰

이용희*†
*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Review on the Port State's Role in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Lee Yong Hee*
* Maritime Law Department,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Busan, 49112, Korea,

핵심용어 : 항만국, 항만국 관할권, 항만국 통제, 해양환경보호, IUU 어업
Key Words : Port State, Port State Jurisdiction, Port State Control, Protection on Marine Environment, IUU Fishing

1. 서 론

국제해양법은 항만국에게 자국 항구에 자발적으로 기항한 외국선박에 대하여 해사 안전 및 안보, 해양환경보호, IUU어업의 방지 및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의 목적으로 다양한 통제권, 조치권,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국제해양법에서 인정하는 항만국의 권리와 의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대응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2. 국제해양법상 항만국 역할의 종류와 범위

국제관습법은 항만국에게 외국선박의 항만 출입에 대한 허가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유엔해양법협약 제25조 제2항과 제211조 제3항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항만국이 외국선박의 입항과 출항에 관하여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관할해역 외측에서 발생한 위법한 해양오염행위를 야기한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항만국이 유엔해양법협약 제218조에 근거하여 조사권과 형사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역외관할권의 하나로서 기국 또는 연안국 관할권의 보완적 역할이자 항행의 원활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된 역할이다. 선원과 선박의 안전과 해양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은 제219조에서 MARPOL협약, SOLAS협약, STCW 협약 등 국제기준 미충족 외국선박에 대하여 조사 및 출항정지 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다. 선박의 보안과 관련하여서는 SOLAS 협약과 ISPS Code에 근거하여 항만국이 외국선박의 보안증서를 검사하고 미충족시 출항정지, 이동제한, 시정요구, 추방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권을 인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IUU 어업과 관련하여서는 1995년 공해어업이행협정과 2009년 항만국 조치협정 등을 통하여 입항 전 정보요구권, 검색 및 항만이용 제한조치권을 부여하고 있다.

3. 항만국 권리의무 행사를 위한 우리나라의 입법현황 분석

우리나라는 다양한 국내입법을 통하여 국제해양법상 인정하고 있는 항만국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한 국내입법으로서는 선박안전법, 선원법, 선박직원법, 해사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국제항행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등이 있다.

4. 평 가

현행 국제해양법은 특정된 분야별로 필요에 의해 자국 항만에 자발적으로 입항하거나 하고자 하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자국의 이익 뿐만 아니라 국제적 이익의 보호를 취한 조치의 이행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항만국의 역할이 자발적 참여성격을 띄고 있어 '편의항만(port of convenience)' 이라는 현상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바 항만국의 역할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입법태도는 국제해양법에서 인정하는 제반 항만국으로서 역할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항만국 관할권 행사를 위한 근거를 미흡하며, IUU 어업에 대한 조치의 내용도 좀 더 적극적이며 의무적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First Author: yhlee@kmou.ac.kr, 051-410-4395